

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

[식품위생법 제72조 관련]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JM-3000 베를카인 [기타가공품 1.5g*30포(45g)]

- 제조업소: [주]네추럴에프앤피 [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9]
- 유통전문판매업소: [주]진명바이오키어 [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, B405호]

나. 유통기한: 2017. 10. 30. 까지

다. 회수 사유: 유통기한 변조

라. 회수 방법: 영업자 강제회수

마. 회수영업자: 한제니 [(주)진명바이오키어]

바. 영업자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, B405호(당산동4가)

사. 연 락 처: 02-326-3410

아. 그 밖의 사항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
-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고 :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생과 (☎ 02-2670-4725)